제 5. 재검토기한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